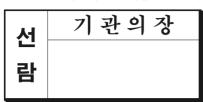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580호 2017. 4. 7(금)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37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 卫 시 제2017 - 23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3 고 卫 제2017 - 301호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7 제2017 - 329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공고 ...... 12 제2017 - 330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0 제2017 - 336호 지역개발사업구역(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지정 공람・공고 … 86 제2017 - 34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89 제2017 - 344호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90 회 람

발행: 남해군 편집: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남해군 조례 제2237호

##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4월 7일

####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 1. 일반회계의 출연금
  -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3.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 4.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적립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적립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2.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적립금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① 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적립금운용관 : 재정안정화 적립금 담당부서장
  - 2. 적립금출납원 : 재정안정화 적립금 담당팀장
  - ② 적립금운용관과 적립금출납원은 적립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고시 제2017 - 23호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 남 해 군 수

정비 기간		2017년 1월 ~ 2027년 1월						
대상 소하천	총 144개소(	주요 소하천: 북변천,	석평천, 벽련천, 시	기문천, 가인포천, 우형천 등)				
총사업비		243,582,000천원	총길이	154.84 km				
목적 및 정비	재해예방	· 제방고 부족구긴 · 농경지 내수침수	호름을 위한 하폭유지 '간의 월류방지  수 방지대책 수립					
효과	생활환경개선	· 친환경적 호안공 · 기존 노후 시설 · 제방폭 유지로	물 개량으로 인형	한 주변 환경개선				

#### 열람서류

-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 2.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고시 제2017 - 36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읍 남서대로1179번길 33-1 외 18건

종전:	종전주소 도로		실명주소	도로명 .	고시일	도로명 -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 <i>경</i> 도로명							
			( 별 도	열 람 )				
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5)

$\bigcirc$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	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기	재된 주소	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6) 제 580 호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4월 7일

										Γ										
	도로명 부여시유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초원이었음을 의미함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초원이었음을 외미함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점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행정구역명을 이용. 무림(숲속마을)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연결되는 중앙도로임을 반영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점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창선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임을 반영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물바라움 등 사람들	물바라움 등 사람들	금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명 고시일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702	20090702	20091023	20091023	20100915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79번질 3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144-1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154	경심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154-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3041-7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음 망운로 14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32-1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202번질 50-2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01번길 18-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21~38	경상남도 남혜군 서면 남서대로 1921~4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38-3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예코파크길 113-3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202번길 72	경상남도 남해군 청선면 동부대로 24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2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370번길 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68번길 27-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269번길 20-8
	총천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29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274-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403-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403~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산4-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054~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0~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404, 405-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097~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잠리 26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264-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4-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406-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58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산157-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5-19, 565-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838-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53-1	<sup>3</sup> 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259, 254, 255, 25
	원 표	-	2	m	4	s	9	7	∞	თ	10	=	12	13	41	15	16	17	18	19



남해군 공고 제2017 - 301호

#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2)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구조·복구활동 참여 등 협력활동
  -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8)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위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3, 팩스 055-860-3727
-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55-86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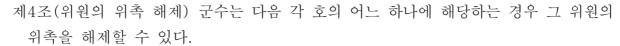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남해군 안전 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 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 6.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580 호 (11)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ગી. ગી મે	급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	i l 긴 네공	찬성	반대		<u> </u>	신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7 - 329호

##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 남 해 군 수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3회 발생하여 피해는 283건 4,555백만원입니다.
  - 재난 유형별로 강풍·호우 2회, 태풍 1회 발생하였으며, 재해복구는 진행중입니다.
  - 우리 군은 태풍의 이동경로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큽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안전총괄과) 3개팀(안전총괄팀, 복구지원 팀, 민방위팀) 16명으로 2015년에 비해 1명 증가하였으며, 재난대응력 향 상을 위해 방재안전직 1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등 8종으로 273개소에 설치·관리 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 농어촌경보시스템 1개소, 재난감시 CCTV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상시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49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시설 노후화)는 보수·보강·재가설·철거 등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
  -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21백만원이며 121백만원을 100% 확보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111백만원 보다 10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143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6백만원을 사용하여 지난해 146백만원보다 90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0등급으로 위험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감소하였습니다.
  - 1등급 하락의 주원인으로는 평가기간 중 태풍차바 북상으로 방재 담당자들의 업무과다로 분석됩니다.
    -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42개 시설 중 14개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33%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6년 정부합동평가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추진실적'에서 '가'등급 획득
- ◆ 2016. 5월달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던 남해전통시장에서 다중밀집이용시설 대형화재 안전한국을 실시하여, 215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재난대응력을 향상하고, 수백명의 군중이 참관함으로써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은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위험환경)이 높으므로 재난관리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 및 복구 내용	추진사항
9.1.~9.4.	호우・강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축대붕괴	
9.17.	호우・강풍	-공공시설 : 축대붕괴 등 -사유시설 : -	
10.3.~10.6.	태풍(차바)	-공공시설 : 축대・제방 붕괴 등 -사유시설 : 농경지 유실 등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기세진에 대통할 모역의 무경 및 정말 가.기구



###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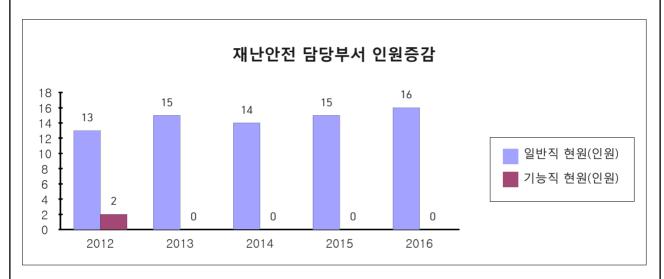
71	н	계	일 반 직								기타
과	2	71	소계	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714
H	정원	16	16	-	1	3	4	4	4	-	-
계	현원	16	16	-	1	3	4	4	4	-	-



제 580 호 (15)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5	15	14	15	16
일반직 현원(인원)	13	15	14	15	16
기능직 현원(인원)	2	-	-	-	-



-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 2013. 12. 12.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외 특별한 인원 변동 없음
  - 2014년도 국민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2015년도 안전총괄과 인원 1명 확충
  - 방재안전직렬 1명 채용 예정



##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9	전읍면
자동우량관측장비	3	상주, 삼동, 미조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9 (상주면 제외, 기상청 장비)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서면, 상주, 삼동, 미조3
재해문자전광판	6	읍, 상주, 미조, 남면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읍,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위성전화기	6	읍,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4	이동, 상주, 서면, 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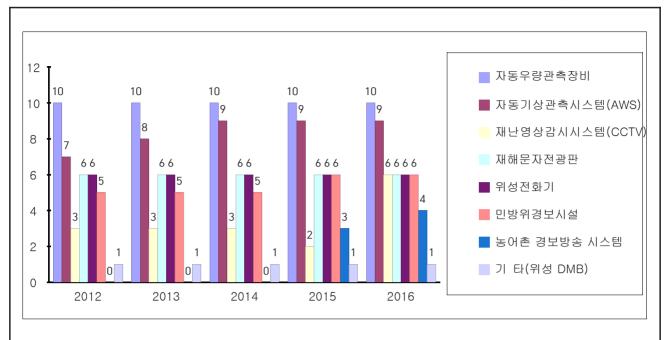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	237	238	239	239
자동우량관측장비	10	10	10	10	10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7	8	9	9	9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	3	3	2	6
재해문자전광판	6	6	6	6	6
위성전화기	6	6	6	6	6
민방위경보시설	5	5	5	6	6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	-	-	3	4
기 타(위성 DMB)	1	1	1	1	1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17)



-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개수차이가 많이 나므로 그래프에서 제외
-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종합계획(5년 단위)에 따라 구축
  - 전읍면 AWS 시스템 구축완료(1개소는 기상청 자료 연동)
  - 기 구축된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로 상시 정상작동
  - 농어촌 경보방송시스템 1개소, CCTV 4개소 신설

##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합계		126	
2016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워크숍	'16.1.22.	경상남도	2	
국가재난의료지원교육	'16.1.28.	경상남도	1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16.2.4.	경상남도	1	
제3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6.2.16. ~3.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실습교육	'16.2.23.	경상남도	1	



(18)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화생방 방호실무과정	'16.3.1. ~3.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해구호 일반과정	'16.3.1. ~3.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지진해일실무과정	'16.3.1. ~3.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기후변화대응과정	'16.3.1. ~3.2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제4기 현장관찰단 역량강화 과정	'16.3.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교량 점검 및 유지관리	'16.3.7.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강화 순회 토론회	'16.3.9.	국민안전처	2	
재난안전 관련 교부세 설명회	'16.3.10.	국민안전처	1	
화생방 방호 실무과정	'16.3.16. ~4.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급경사지관리실무과정	'16.3.16. ~4.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풍수해보험실무과정	'16.3.16. ~4.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16년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담당자 교육	'16.3.17. ~3.18.	경상남도	1	
2016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순회교육 참석	'16.3.22.	국민안전처	1	
재난관리 실무과정	'16.3.23. ~3.25.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2016년 환경담당공무원 환경연수	'16.3.24. ~3.25.	경상남도	1	
감염성물질의 안전수송관리	'16.4.1.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1	
방재실무과정	'16.4.4. ~4.8.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2	
생활속 안전 길잡이	'16.4.5. ~4.25.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재난관리 일반	'16.4.5. ~4.26.	경상남도	1	
재난관리시스템 서비스별 업무담당자 교육	'16.4.7.	남해군	5	
메르스,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에볼라 등의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교육	'16.4.15.	경상남도	1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19)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전국 어업감독원 설명회	'16.4.18. ~4.19.	경상남도	1	
2016년도 어선사고예방 관계기관 설명회	'16.4.19. ~4.20.	경상남도	1	
2016 상반기 공직자 안보교육	'16.4.19.	경상남도	1	
상수도 안전운영관리	'16.4.20. ~4.21.	경상남도	1	
여름철 대비 자해위험 저수지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16.4.21.	경상남도	1	
저수지 댐 안전관리과정	'16.4.27. ~4.29.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지자체 해안방제 관련 워크숍	'16.4.28.	국민안전처	1	
재난관리 일반	'16.5.1. ~5.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기후변화대응과정	'16.5.1. ~5.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유해화학물질관리	'16.5.2. ~5.16.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新대기오염처리기술(3기)교육	'16.5.2. ~5.16.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2016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교육	'16.5.11.	경상남도	1	
적조 대응능력 함양 교육	'16.5.23.	경상남도	1	
2016 관리감독자 안전교육(공통)	'16.5.24. ~5.25.	경상남도	1	
생물테러감시체계사용자교육	'16.6.9.	경상남도	3	
시군 방재담당공무원 여름철 풍수해 대책 특별 순회교육	'16.6.16.	경상남도	1	
지진해일실무과정	'16.6.16. ~7.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화생방방호실무과정	'16.6.16. ~7.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16 주부민방위기동대 재난 및 안보견학	'16.6.16. ~6.17.	경상남도	1	
감염병관리 및 위기대응과정 교육	'16.6.20. ~6.24.	경상남도	1	
시설물 관리자(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	'16.6.30.	경상남도	1	



(20)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6년 전국 산불방지 연찬회 참석	'16.6.30. ~7.1.	경상남도	2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교육	'16.7.1.	경상남도	2	
을지연습 순회교육	'16.7.12.	국민안전처	1	
2016 을지연습 순회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교육 참석	'16.7.12.	국민안전처	1	
2016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	'16.7.20.	국민안전처	1	
여름철 산사태방지대책 교육	'16.7.28.	경상남도	2	
지자체 사회재난 복구 담당공무원 교육	'16.8.3.	국민안전처	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지침 교육	'16.8.11.	국민안전처	1	
산사태예방대응 담당자 직무교육	'16.8.19.	경상남도	1	
재난관리포털시스템 담당자 교육	'16.8.30.	경상남도	1	
재난관리실무과정	'16.8.31. ~9.2.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2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 이해하기 과정	'16.9.1. ~9.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기후변화대응과정	'16.9.1. ~9.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관리 일반	'16.9.5. ~9.30.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1	
2016 하반기 해양오염조사과정	'16.9.26. ~9.30.	국민안전처	1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교육	'16.10.12.	국민안전처	1	
지진해일실무과정	'16.10.16. ~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특정관리대상시설과정	'16.10.16. ~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안전문화교육과정	'16.10.20. 10.21.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3	
경보실무과정	'16.10.24. 10.2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급경사지관리실무과정	'161101. ~11.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21)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제10기 재난관리 일반	'16.11.1. 11.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기후변화대응과정	'16.11.1. ~11.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16년 재해복구사업 조기복구 추진지침교육	'16.11.3.	국민안전처	2	
2016 수질오염사고 담당자 방재교육	'16.11.8.	낙동강유역 환경청	1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평가 지침 설명회	'16.11.10.	국민안전처	1	
기후변화대응과정	'16.11.16. ~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핵심 재난예방 기술을 통한 도시방재 역량 강화 국제 컨퍼런스 참석	'16.11.17.	국민안전처	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실무담당자 교육	'16.11.18.	국민안전처	1	
민방위실무과정	'16.11.21. ~11.2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전산재해대장 및 복구관리시스템과정	'16.12.1. ~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하천관리실무과정	'16.12.1. ~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기후변화대응과정	'16.12.1. 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태풍호우상황판단게임과정	'16.12.1. ~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풍수해 보험 실무과정	'16.12.1. ~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하천관리실무과정	'16.12.1. ~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3	
재해구호일반과정	'16.12.1. ~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지자체 재난안전 순회교육	'16.12.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7	
급경사지관리실무과정	'16.12.1. ~12.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관리자과정	'16.1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중대본 및 지대본 비상근무자 교육	'16.12.5. ~12.7.	국민안전처	1	



(22)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방재단만)	내 용	주관	비고
2016.5.18.	남해읍 남해시장	20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대형화재 대비 복구 훈련 참여	남해군	
2016.10.11.	방재단 교육	30	임무분담 점검 등	남해군	

##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2016. 4. 15.	공용 터미널	60	비상차로 확보 및 공용터미널 화생방 대응 훈련	남해군	
제401차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2016. 5. 16.	남해군 일대	60	주변 대피소 찾기 및 비상차로 확보	남해군	
안전한국훈련 (남해시장 화재대응)	2016. 5. 18.	남해읍 남해시장	215	대형화재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남해군	
을지훈련 실제훈련	2016. 8. 24.	남해문화 체육센터	170	적 생물무기 테러 단계별 대응절차 숙달	남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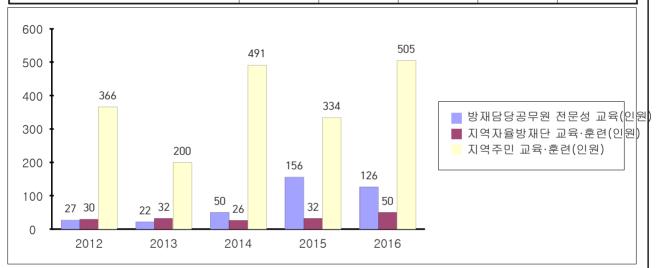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23)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 계	423	254	567	522	681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27	22	50	156	12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30	32	26	32	50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66	200	491	334	505



##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6년도 안전한국훈련이 시범 시군으로 지정되어 교육참석 인원 증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27	22	50	156	12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30	32	26	32	50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66	200	491	334	505



##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sup>1</sup> 6.10.25	서울	1	경남재난안전	국민안전처	
10.10.23	백범김구 기념관	'	네트워크 워크숍	<u> 국민인전</u> 저	

###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피터시점/거\	-	처리실적(건	)	비고
중시단건(인권구)   	제보실적(건)	완료	진행	불가	비고
'11년(26명)	10	9	_	1	
'12년(26명)	30	7	22	1	
'13년(34명)	66	39	25	2	
'14년(33명)	17	17	_	_	
'15년(33명)	11	6	5	_	
'16년(33명)	8	8	_	_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1	설명적 안전문화 캠페인	명절 안전수칙 당부	2.2.	남해읍 남해시장	20	
2	주부민방위 화재예방 캠페인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 화재예방 캠페인	2.18.	남해읍 남해시장 시가지일대	10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25)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3	산불 예방 캠페인	산불 예방	3.14.	남면 소재지	20	
4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 전개	결핵예방 캠페인	3.23.	남해읍 남해대학	10	
5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캠페인	화재예방	5.14.	고현면 화방사 인근	30	
6	마늘축제장 안전지킴이 부스운영	심폐소생술 등 안전관련 체험 및 홍보	5.27. ~5.29.	마늘축제장	20	
7	물놀이 안전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에방 요령 홍보	7.20.	상주면 은모래비치 해수욕장	30	
8	물놀이 안전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에방 요령 홍보	7.26.	상주면 은모래비치 해수욕장	20	
9	물놀이 안전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에방 요령 홍보	8.3.	상주면 은모래비치 해수욕장	20	
10	물놀이 안전 캠페인	물놀이 안전사고 에방 요령 홍보	8.12.	미조면 송정솔바람 해수욕장	20	
11	추석명절 안전문화 캠페인	명절에 지켜야 할 안전수 칙 당부	9.7.	남해읍 남해시장	21	
12	겨울철 산불예방 합동캠페인	산불예방 홍보	12.17.	상주면 금산입구	300	



(26)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안전신문고 생활안전지도 앱 홍보 나서	시책 홍보	1월14일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전국매일	
2	"즐거운 설 연휴 안전하게 보내세요!"	설 안전 홍보	2월2일	도민일보 경남도민신문 전국매일 한남일보	
3	해빙기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해빙기 홍보	2월4일	경남도민신문 도민일보 전국매일 뉴스경남	
4	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기관 선정	우수결과 홍보	2월16일	경남매일 뉴스경남	
5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군민 안전 위협 요소 제거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월19일	뉴스경남 한남일보	
6	남해군, 안보 재난 대비 "이상 무!"	시책홍보	3월4일	뉴스경남 한남일보	
7	2016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실 시	훈련홍보	3월10일	창원일보 경남매일	
8	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추진 '탄력'	시책홍보	3월24일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창원일보	
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훈련 홍보	5월11일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10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훈련 홍보	5월12일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창원일보	
11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시책 홍보	5월13일	경남도민신문 한남일보	
12	남해전통시장서 화재대응 현장훈련실시	훈련홍보	5월19일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13	관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실시	6월9일	경남도민신문 전국매일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27)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4	폭염대비 인명피해 예방활동 '총력'	폭염 예방활동	6월21일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전국매일 창원일보	
15	주부민방위기동대 재난.안보견학 실시	안보견학 실시	6월24일	뉴스경남	
16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 실시	교육 홍보	6월27일	경남연합일보	
17	공직자 안보태세 '이상무'	교육 홍보	6월28일	한남일보	
18	주부민방위기동대, 향토장학금 기탁	우수사례 홍보	7월7일	뉴스경남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19	남해군 설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	시책 홍보	7월11일	도민일보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경남매일	
20	폭염 대책 추진 '총력'	폭염 대응	7월27일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21	남해군수, 폭염 속 군민 건강 챙기기 '분주'	폭염 대응	8월2일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 뉴스경남	
22	을지연습 준비 '이상 무'	을지연습	8월17일	뉴스경남	
23	주부민방위기동대, 송정솔바람해 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 동	여름철 캠페인	8월17일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뉴스경남 경남매일	
24	'2016 을지연습'본격 돌입	훈련 홍보	8월22일	도민일보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25	을지연습 생물무기테러·감염병 대비 실제훈련 실시	훈련 홍보	8월24일	경남도민신문	
26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착수	시책 홍보	9월6일	경남도민신문 경남일보 전국매일 뉴스경남	



(28)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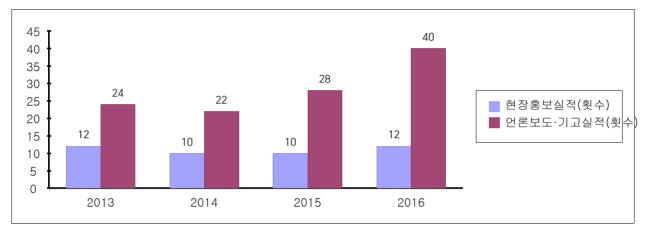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27	화재 사고 신속 피해 복구 지원	사고 복구	9월8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28	"즐거운 추석 명절, 안전부터 챙기세요"	명절 안전 홍보	9월9일	도민일보 뉴스경남	
29	폭우피해 신속 복구 '총력'	폭우 대응	9월18일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창원일보	
30	2016 충무 민.군 나라사랑 콘서트, 남해서 개최	콘서트 홍보	9월25일	창원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신문 경남매일	
31	태풍 '차바' 대비 체제 구축	태풍 대비	10월4일	뉴스경남	
32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신속 복구 '총력'	태풍 대비	10월5일	경남도민신문	
33	남해대대, 태풍피해 복구지원 '앞장'	테픙 복구	10월13일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경남일보 뉴스경남	
34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 실시	훈련 홍보	10월20일	창원일보 경남매일	
35	제22회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개최	한마음대회	11월3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창원일보 뉴스경남	
36	자율방재단.주부민방위기동대 한마음대회 개최	한마음대회	11월4일	뉴스경남	
37	재해복구사업 속도 낸다	태풍 복구	11월16일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 창원일보 경남매일	
38	자율방재단, 이정기 단장 선출	방재단	12월15일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39	동절기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 홍보	12월20일	뉴스경남 전국매일 경남연합일보	
40	겨울철 산불예방 합동캠페인	안전 홍보	12월20일	창원일보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29)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0	10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4	22	28	40



-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 홍보활동 강화로 캠페인, 언론보도 횟수 증가



##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군수 • 위원 : 16인	<ul> <li>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 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 획안의 심의</li> <li>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 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 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 는 사항의 처리</li> <li>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 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 14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군수	<ul> <li>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법 제75조	• 위원 : 10인	• 전문지식을 이용한 안전점검 및 현장 상담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 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 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자문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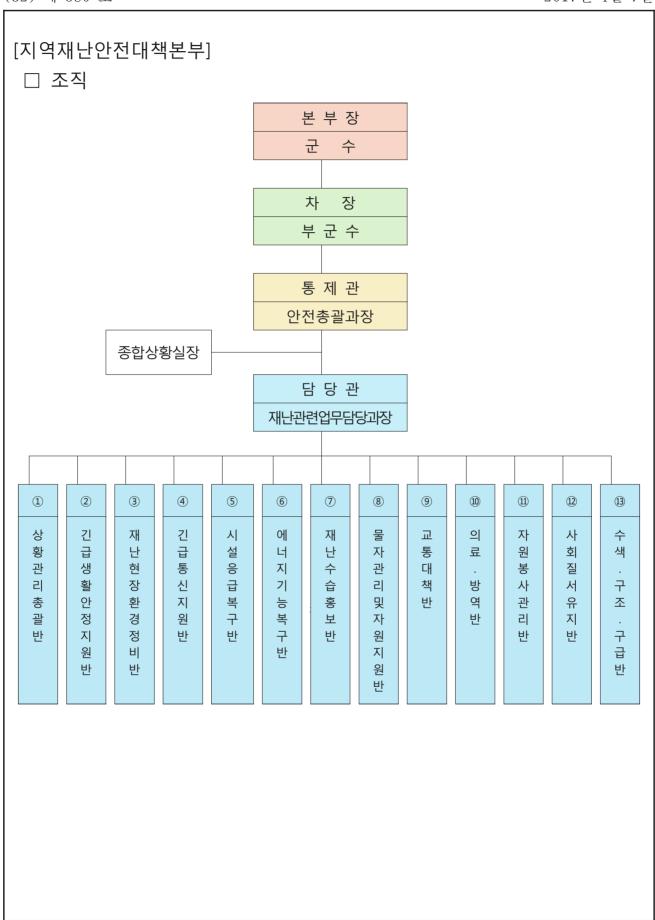
2017년 4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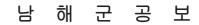
제 580 호 (31)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li>고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군수→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li>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 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군수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32)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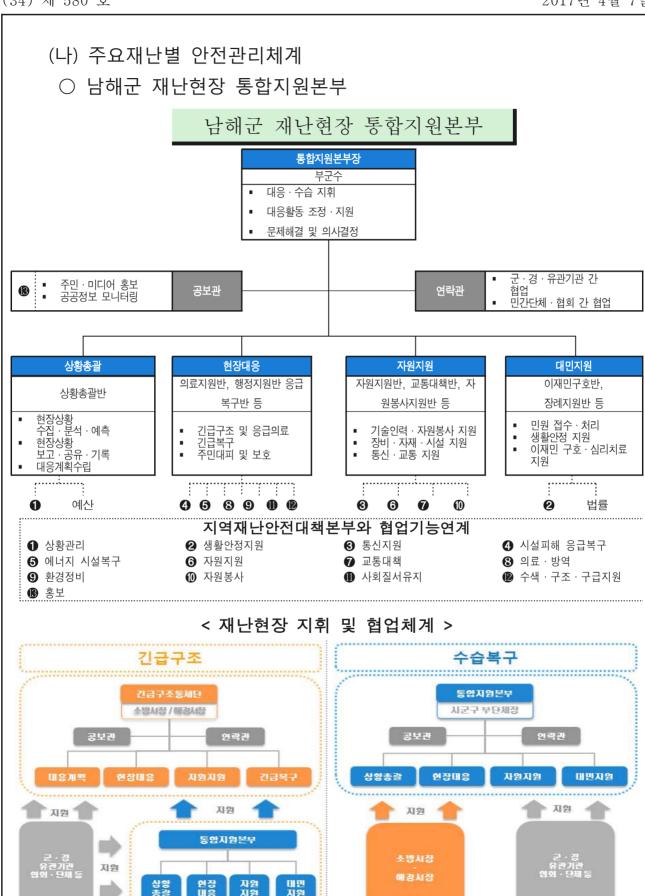


제 580 호 (33)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연번	구분	수습부서	임무와 역할	유관기관
1	상황관리총괄	안전총괄과	<ul><li>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li><li>*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및 총괄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파악 등</li></ul>	
2	긴급생활지원	주민복지실	<ul> <li>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li> <li>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li> </ul>	
3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녹지과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4	긴급통신지원	행정과	● 통신두절 시설·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KT 사천지점
5	시설응급복구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히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 각 부서 담당 시설별(공공 . 사유) 응급복구 지원	
6	에너지기능복구	경제과	<ul><li>가스, 전기, 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li></ul>	* 한국기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한국전력 남해지사
7	재난수습흥보	기획감사실	<ul><li>재난대처, 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 조정</li><li>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li></ul>	
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안전 <del>총</del> 괄과	<ul><li>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li><li>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 지원 총괄관리</li></ul>	
9	교통대책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 육상 . 항공 건설교통과, 해상 해양수산과 ● 교통분야 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10	의료 . 방역	보건소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11	자원봉사관리	주민복지실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남해소방서
12	사회질서유지	남해경찰서	<ul><li>■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li><li>■ 현장통제, 주민보호(대피 등) 경찰총괄관리</li></ul>	
13	수색.구조.구급	남해소방서	<ul><li></li></ul>	

(34)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통합지원본부 조직도 등은 재난의 유형과 확산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
남해소방서	-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 긴급구조관련기간의 긴급구조활동 통합.조정
남해경찰서	-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 - 사상자 신원확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
39사단118연대2대대	-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전기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한국전력남해지사	- 전력 설비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KT남해지점	- 통신 시설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남해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 - 이재학생 대책 - 공납금 면제 및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 방재교육 -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및 흥보
부산기상대	- 기상통보 및 특보 발표
통영해양 경비안전서	-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 대규모 해양오염시 방재작업 협조
한려해상국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 피서객 대피 - 기상상황 흥보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	2004.12.30.	안전총괄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4.12.30.	안전총괄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	2005.10.04.	안전총괄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005.12.12.	안전총괄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12.29.	안전총괄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회 운영 조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사항 규정	2005.12.29.	복구지원팀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레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벙위 등을 규정	2006.10.02.	안전총괄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04.09.	민방위팀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겨우 건축·형질변경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1.04.15.	복구지원팀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발생시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시 필요한 사항 규정	2012.05.04.	복구지원팀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규정	2013.05.08.	안전총괄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 규정	2014.02.28.	안전총괄팀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12.28.	안전총괄팀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15.12.04.	민방위팀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송신소	KBS 망운신송신소	통제실	KBS 순천방송국	1978.1.	철조망 CCTV 설치	055-863-0802

#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시설물					건축물					
총계	소계	교량	유원 시설	대형 토목 공사 장	기타	소계	공업 시설	공동 주택	중소 청 충 축	건축 공사 장	비 고
49	8	1	1	5	1	41	5	19	16	1	-

### [등급별]

구브	-NI		중점관	리시설		재	설		
구분	계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비고
계	49	47	16	26	9	2	2	-	
시설물	8	6	-	4	6	2	2	-	
건축물	41	41	16	22	3	-	-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 인

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

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38)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A등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이상이 없는 시설)

※ B등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C등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D등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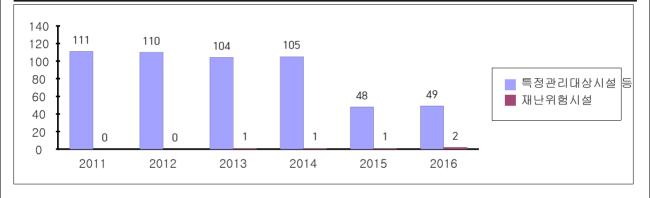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시설

※ E등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시설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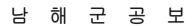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111	110	104	105	48	49
재난위험시설	-	-	1	1	1	2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 2015년도「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개정에 따라 특 정관리대상시설이 48개소로 감소하였음
- 금전2교(D등급) 재가설로 인한 지정 해제
- D등급 노후교량 2개소 노후교량 (남산교, 토촌교) 재난위험시설 신규 지정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노후교량	남산교	L:18.4m, W::6.45m, H:3m	공공	2016. 7.29.	재가설	1,600	예산확보	2017년
노후교량	토촌교	L:13.6m, W::6.7m, H:2.2.m	고	2016. 7.29.	재가설	900	예산확보	2017년





제 580 호 (39)

#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6.1.1 ~'16.6.30	49	49	17	안전 <del>총</del> 괄과, 소관부서	정비 (현지시정)
하반기	'16.7.1 ~'16.12.31	49	49	86	안전 <del>총</del> 괄과, 소관부서	정비 (현지시정)

# [정비실적]

시설	시설명	시설	관리	지정	해소	사업비	조치	해소
유형		현황	주체	일자	계획	(백만원)	사항	완료년도
기타	금전2교	교량	해양수산과	15.7.20.	재기설	900	조치완료	2016. 6.



2017년 4월 7일

(40) 제 580 호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부서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합계			43,43 0	
광천소하천 정비	안전 총괄과	남창선면 광천마을 일원	실시설계 L=2.1km	'15. 8 ~ '16.12	296	재해예방
정거소하천 정비	안전 총괄과	이동면 정거마을 일원	실시설계 L=2.25km	'15. 11 ~ '16.12	296	재해예방
부윤천정비	안전 총괄과	남창선면 금송마을 일원	소하천 정비 L=0.324km	'16. 8 ~ '17. 7	500	재해예방
화천 고향의 강 조성(3차)	안전 총괄과	삼동면 내산마을 일원	하천 정비 L=0.29km	'16. 2 ~ '17. 4	2,632	재해예방
금송소하천 정비	안전 총괄과	삼동면 금송마을 일원	하천 정비 L=0.689m	'15. 10 ~ '17. 7	1,000	재해예방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안전 총괄과	상주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설리해수욕장 미조항(남항)	재난감시용 CCTV 4개소	'16. 6 ~ '16. 8	49	재해예방
농어촌 경보장치 설 치	안전 총괄과	고현면시무소 옥상	농어촌경보 장치 1식	'16. 6 ~ '16. 6	27	재해예방
재해문자전 광판 교체	안전 총괄과	사촌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재해문자전 광판 2식	16. 8. ~16. 10.	70	시설노후에 따른 교체
대곡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건설 교통과	고현면 대곡리	저수지보수 보강 1개소	16.04. ~17.10.	500	농업기반시 설정비 및 재해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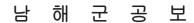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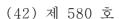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41)

사업명	부서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관당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건설 교통과	고현면 오곡리	저수지보수 보강 1개소	16.04. ~17.10.	495	농업기반시 설정비 및 재해예방
보량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건설 교통과	이동면 석평리	저수지보수 보강 1개소	16.06 ~17.12.	125	농업기반시 설정비 및 재해예방
연곡 소류지보강 개발사업	건설 교통과	창선면 오용리	저수지 보강개발 1개소	16.04. ~18.10.	1,500	농업기반시 설 정비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상하수도 사업소	남해읍 일원	하수관거 정비 116km	'08.6. ~'16.8.	19,02 5	하수관거 정비
당항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상하수도 사업소	남면 당항리 일원	하수처리장 200㎡/일 하수관로 12km	'13.12. ~'18.6.	9,036	하수처리시 설 설치
원천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 설 설치공사	상하수도 시업소	이동면 원천마을 일원	하수처리장 150㎡/일 하수관로 2.7km	'13.12. ~'16.5.	3,349	하수처리시 설 설치
광천·사포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상하수도 사업소	창선면 광천리 일원	하수처리장 85㎡/일 하수관로 4.4km	'15.4. ~'18.4.	4,100	하수처리시 설 설치
장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해양 수산과	남해군 창선면 장포항	피복석 이탈부보강 , TTP 제작 및 거치 267EA	'16.11. ~'17.02.	430	재해예방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2017년 4월 7일

-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 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작성범위**: 군수가 발주하는 사업(본예산, 추가경정 예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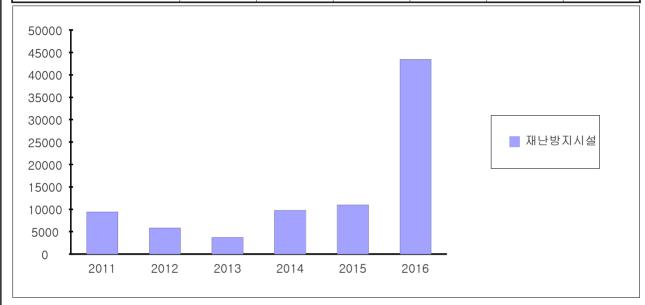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43)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9,366	5,802	3,701	9,800	11,021	43,430



###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도까지는 재난부서에서 실시한 재난방지시설 내역만 산정 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타부서의 재난방지시설까지 산정하여 금액 증 가



#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휀스	유흡착제	기름제거제 (유처리제)	방제 작업복	소석회
	T M m		kg	L	벌	ton
총계	10,544	1,751	5,392	0	3,400	1

###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합 계 2		23	3	135	0
병 원	1	10	18	1	135	0
보건소	1	3	5	2	0	0
기 타						

### [수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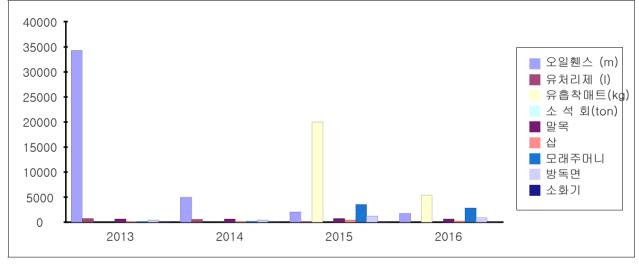
7 🖰	합계 구분		<u></u>	一	마을	율회관	경로당		· 관공서		기 타	
十亡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총계	54	21,153	11	14,108	34	2,449	_	_	9	4,596	_	_

제 580 호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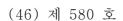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3	2014	2015	2016
오일휀스 (m)	34,300	5,000	2,052	1,751
유처리제 (I)	760	600	162	0
유흡착매트(kg)	-	-	20,000	5,392
소 석 회(ton)	0	0	0	1
말목	630	654	724	631
삽	130	180	449	246
모래주머니	165	200	3,550	2,830
방독면	424	424	1,240	909
소화기	92	92	4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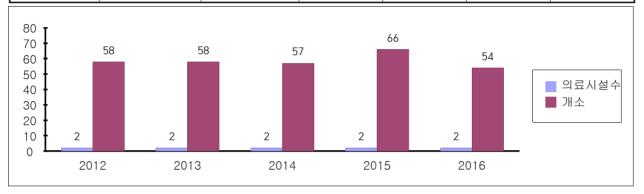


-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도부터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도입으로 방재물자 전산 관리
  - 유흡착매트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통해 수량 조절
  - 유처리제는 기한만료로 폐기



###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의료시설수		2	2	2	2	2
<b></b>	개소	58	58	57	66	54
수용시설	수용인원	14,835	14,835	17,187	29,952	21,153



- \* 수용인원은 개수차이가 많이 나므로 그래프에서 제외
-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큰 변동사항 없음

###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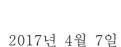
[장비지정]

### ◆ 구조장비

구분	계	구급차	구조선	들것	구명 조끼	구명환
총계	68	2	1	2	25	38

###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차륜형 굴착기	궤도 굴착기	덤프	화물 트럭	청소차	페이 로더
총계	47	0	0	4	2	31	8	2



제 580 호 (47)

#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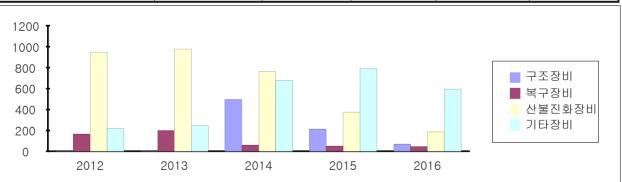
구분	계	탱크 트럭 (대)	소방용 펌프 (개)	등짐 펌프 (개)	간이 수조 (개)	임차 헬기
총계	187	13	3	168	2	1

### ◆ 기타장비

			콤푸	어진	수중		<u></u>	취사
구분	계	용접기				무전기	元	元
			레사	펌프	펌프		서트	서트
총계	596	_	_	35	6	170	254	131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조장비	3	3	494	212	68
복구장비	164	201	59	49	47
산불진화장비	944	979	763	373	187
기타장비	218	245	678	792	596



#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등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품목변경으로 숫자 변경이 큼



(48)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인력지정]

#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6	3	3	0	0	0	0	0	0

#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	기계	통신 공	착암	절단	용접	철근	중기	중기	배관	기
1 =	711	공	공	귀0	공	공	공	공	운전	정비	공0	타
인원	28	5	1	3	_	_	2	_	11	4	_	2

###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구분	계	의용 소방 대	산악구조대	주부 민방 위대	지역 자율 방재 단	적십자 봉사대	사 일 왕 남 군	해병 전우 회	모범 운전 자회	여성단 체협의 회	기타
인원	5,086	552	0	140	171	260	467	32	42	2,258	1,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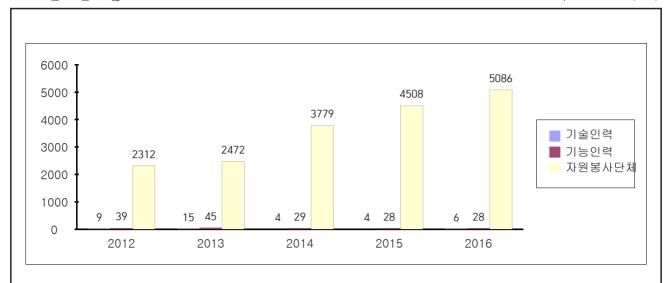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술인력	9	15	4	4	6
기능인력	39	45	29	28	28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312	2,472	3,779	4,508	5,086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제 580 호 (49)



- 큰 변동사항 없음

#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여름철 · 겨울철 사전대비 태세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결과	비고
여름철 사전대비	2016. 4.	국민안전처・경남도	보통	
겨울철 사전대비	2016. 10	국민안전처・경남도	보통	
지역안전도	2016. 10.	국민안전처	미흡	
재난관리실태평가	2016. 12.	국민안전처・경남도	평가중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평가	2016. 2.	국민안전처	보통	
을지연습 평가	2016. 8.	국민안전처・경남도	보통	
물놀이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	2016. 8.	국민안전처・경남도	보통	_



2017년 4월 7일

###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2016년 내진	보강 실적	내진율(%)
시설	152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 보강 실적(2) (전년도 까지)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2+3)/1 ×100
소	소 계 42 14		0	0	33%	
공공시설물		32	14	0	0	43.75%
도로/	시설물	10	0	0	0	0%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

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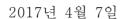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

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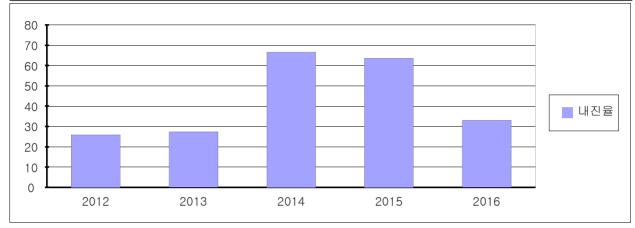




제 580 호 (51)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내진율	25.9	27.3	66.6	63.6	33



-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변동이유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 후 국미안전처 검토결과 반 영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ᄀᆽᆌ	지다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비고
지역대책본부 부		부	Й	
종합상황실	부	부	Й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실시 중
- 지대본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2016년 4월 전력과 통신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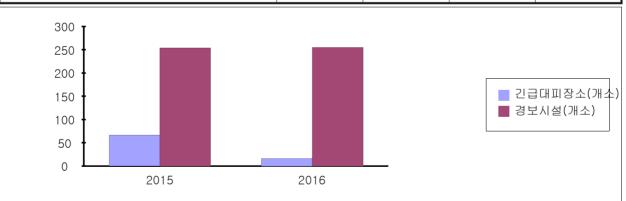


### 라. 지진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긴급대피장소		경보			
지구별	(개소)	계	안내표지 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시스템 (개소)
_	16					255

### ◈ 지진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정비 시	h업비 집행실적 (천원)				
	지구수(개소)				_
긴	급대피장소(개소)	_	_	66	16
丑	안내표지판				
지	지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판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개소)	_	_	254	255



- ☞ 정비 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도는 임시거주지를 긴급대피장소로 활용했으나 2016년도 지 진대피장소 16개소 지정 (공설운동장 5개소, 학교운동장11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9, 민방위경보시설 6, 재해전광판6, 농어촌 경보방송시스템 4개소를 경보시스템으로 산정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 평균액의 1%	121백만원	121백만원	100%

###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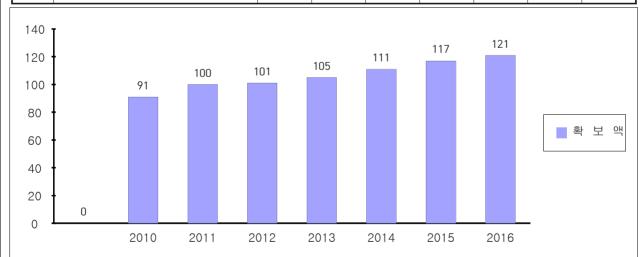


(54)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 여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	<u> </u> 위 : 박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확 보 액	91	100	101	105	111	117	121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17	0	9	282	182	85	107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9	122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용 액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4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 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2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지침에 따라 100% 금액 확보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연번	관리번호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1	자연1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풍수해 대응
2	자연2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지진 대응
3	자연3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화산폭발 대응
4	자연4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수산과	2013	적조 대응
5	자연5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3	가뭄 대응
6	사회1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녹지과	2014	산불
7	사회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녹지과	2014	유해화학물질유출 재난
8	사회3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녹지과	2013	수질오염 재난
9	사회4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수산과	2013	수질오염 재난
10	사회9	다중밀집이용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다중밀집이용시설 화재 대응
11	사회11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수산과	2014	해양선박사고 대응
12	사회1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과	2014	대형사업장 사고 대응



(56)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연번	관리번호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13	사회13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표준행동매뉴얼	도시건축과	2015	다중밀집이용시설 붕괴 대응
14	사회15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산과	2013	가축질병 재난
15	사회16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4	감염병 재난
16	사회20	전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과	2014	전력사고 대응
17	사회22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4	보건의료 재난 대응
18	사회23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수도과	2014	식용수 재난
19	사회24	육상화물운송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마비
20	주요1	정부중요시설(청사)	재무과	2014	정부 청사 관리
21	주요2	도로터널	건설교통과	2014	도로터널 재난 대응
22	주요6	가스	경제과	2016	가스 재난 대응
23	주요10	위험물사고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	2016	위험물사고 대응
24	주요11	저수지	건설교통과	2016	저수지 붕괴 대응

#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일괄개정	2014. 11.	매뉴얼 내용 일괄 개정	
일괄개정	2016. 11.	국민안전처 새양식대로 개정	

제 580 호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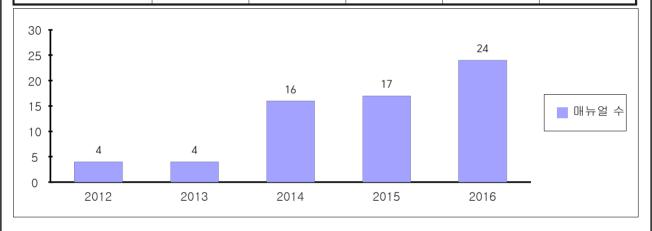
2017년 4월 7일

#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다중밀집이용시 설 대형화재	5.18.(수) 14:00	다중밀집이용시설 화재대응	상황연락관 지정 대형버스 대비 등 교통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8. 24.(수) 15:00	화학테러 대응	-	

###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뉴얼 수	4	4	16	17	24



###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2016년도 11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에서 새매뉴얼을 배포함 에 따라 매뉴얼 일괄 수정
- 우리 군은 42개 재난유형(자연 5, 사회 26, 주요상황 11) 중 24개 재난에 대한 매뉴얼 작성대상이며, 작성을 완료
- 2016년도 11월달 매뉴얼 일괄정비하며 매뉴얼 수 증가

# ⑤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27	0.796	0.343	0.810	10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

###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 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 전도 진단 실시

#### ※ 분야별 진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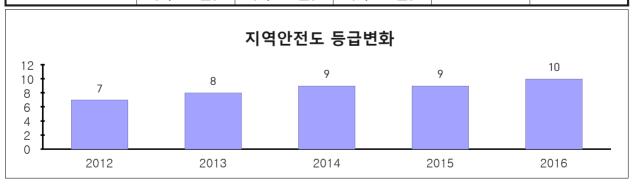
- 위 험 환 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 재 성 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니이	7등급 (라 그룹)	8등급 (라 그룹)	9등급 (마 그룹)	9등급	10등급



###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우리 군은 5년간 지역안전도 미진단 지자체로서 2016년도 진단을 받고 10등급을 받았음(전년도 대비 1등급 하락)
- 태풍 차바(2016. 10. 3.~10. 6.) 복구준비로 방재담당자자의 평가 준비 부족



#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6년도 지역안전지수 평가결과 공개 ( ) 내서 가중치

분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남해군 등급		
화재	환산사망자(.500) (사망자수+발생건수)※ 교통사고 화재 제외	재난약자수(.137),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09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55)	병상수(.024), 재정자주도(.019), 도시지역면적(.172)	4등급		
교통 사고	교통사고 사망자(H,500) ※ 고속도로사망자 제외	재난약자수(.224), 기초수급자수,(.022) 의료보장사업장수(.044), 자동차등록대수(.081)	의료기관수(.042), 인구밀도(.066) 구조구급대원수(.022),	3등급		
범죄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500)	총전입자수(.061), 인구밀도(.061), 기초수급자수(.064), 제조업 업체수(.032),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140)	경찰 사업체수(.141)	2등급		
안전 사고	119구급건수(.500)	하천면적(.022), 산림면적(.076), 재난약자수(.186), 시군구외 전입자수(.059), 건설업 종사자수(.048), 제조업 종사자수(.068)	의료보험료 수납액(.041)	4등급		
자살	자살 사망자수(.500)	고령인구수(.180), 혼인귀화자수(.071),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064), 기초수급자수(.1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076)	3등급		
감염병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건강보험급여실적(입원)(.045), 고령인구수(.310), 기초수급자수(.0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지수(.03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021)	4등급		
자연 재해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 \* (안전) 1등급 <----> 5등급 (위험)
- \* (전년 대비 변경사항) ① 화재 위해지표 대상 변경(교통사고 화재 제외)
  - ② 안전사고 위해지표 대상 변경(구조건수 제외)
  - ③ 감염병 위해지표 대상 변경 (패혈증 등 비법정감염병 제외)
  -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해군 안전총괄과(담당자: 윤성찬, ☎055-860-342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330호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28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 공포(시행일 '16. 12. 30)
  -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규정에서 9종 삭제
  - 개별법령 명칭변경 등에 따라 4종에 대해 일부 조문 수정하여
  - 수수료의 가격 변동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제3조요율)

-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안2호(25,28,32,33,47,66), 안4호(9,10,11), 안5호(8,10,15,17)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4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61)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84,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전화 055-860-3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제 580 호

의 견 제 출 서						
자 치						
의 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찬성	반대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별표 1]

#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제1항 관련)

# 1. 증명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2) 무적자사실확인	1통	1,000	
(3)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4) 부재자사실확인	1통	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소유사실확인	1통	1,000	
(2)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1통	3,000	
(3) 가축자가사육 확인	1통	1,000	
(4) 관상수목자가생산 확인	1통	5,000	
(5) 리장재직사실확인	1통	1,000	
(6) 경작사실확인	1통	1,000	
(7)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1,000	
(8)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	
(9) 실수요자 사실확인	1통	1,000	
(10) 조림실적확인	1통	1,000	
(11) 식품제조보고사실확인	1통	1,000	
(12) 폐선해체확인	1통	1,000	
(13)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1통	1,000	
(14) 거주사실확인	1통	1,000	
(15) 호(제)적멸실확인	1통	1,000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65)

(16)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1통	600	- 1
(17) (식품공중) 영업허가, (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500	
(18) 의료기관 약국(휴·폐업등)사실증명	1통	1,000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1필지	300	
측량 도면의 재교부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400	
(4)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	
(7)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8)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1필지당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1통	800	
5.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	
(3) 원천징수공제 증명	1통	1,000	
(4) 물품납부 실적증명	1통	1,000	
(5) 공시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확인원	1통	1,000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000	
6.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통	1,000	
6. 주택에 관한 증명			



(66)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	1통	1,000	
7. 기타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	
(2)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통	500	

#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 일반행정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필지당	800	
(2)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속)신청	1건	3,000	
(3) 국·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5,0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	
(5)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7,000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당	800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당	8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	
(2)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3)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	1건	1,000	
(4) 어획물 양육(전적)허가 신청	1건	1,000	
(5)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500	
(6)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7)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	
(8)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800	
(9)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	
(10)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	
(1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67)

(12)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200
(1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14) 연안어업 허가	1건	2,500
(15)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
(16)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200
(1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1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19)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1건	10,000
(20)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
(21)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22)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800
(23) 어업신고	1건	1,600
(24)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
(25) 어업면하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빌급	1건	1,000
(26)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27)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
(28)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29) 관리선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	1건	1,600
(3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1)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1건	2,500
(32)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33)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34)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	1건	2,000
(35)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
(36)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37)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39)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



(68) 제 580 호 **그 1017년 4월 7일** 

(00) / 1 000 조		2017 U 4 E 7 E
(40)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41) 한시어업 허가	1건	2,000
(42) 한시어업 허가연장	1건	2,000
(43)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
(4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4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46)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47)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48)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49)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
(50)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51)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
(52)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2,000
(53)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1건	1,000
(54)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000
(55)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56)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등록필증 등)	1건	1,000
(57)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	1건	1,000
(3)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건	5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
(5)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6)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20,000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20,000
•일반·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30,000
		'   <b> </b>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69)

		<u> </u>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건	10,000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	1건	10,00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7)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00	
(2)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의 용지비 공사비의 보상비 제외 1/1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종가 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	
(6)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7)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1건	1,000	
(8) 소하천공사(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9)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	
(10)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11)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13)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14)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	
(1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16)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17)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1건	7,000	
(18)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9)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	1건	10,000	



 (70) 제 580 호
 B 에 분 80 포

 2017년 4월 7일

(10) A 300 X		2011 년 4월 1월
(20) 법인 합병인가 신청	1건	10,000
(21)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	1건	10,000
(2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5.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4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4)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9)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10)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
(11)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	2,300
•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1,200
(12)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2,300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1,200
(13) 기 타		
(11) ~ (12) 사항 중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함		
(1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71)

1건 40, 1건 10,	000
1건 10,	000
1건 10,	000
1건 5,	000
	000
1건 60,	000
1건 50,	000
1건 30,	000
1건 15,	000
1건 30,	000
1건 15,	000
1건 20,	000
1건 5,	000
1건 4,	000
1건 2,	000
규1건 4,	000
신1건 2,	000
구경40mm미만 2,	000
구경40mm이상 4,	000
구경40mm미만 2,	000
구경40mm이상 4,	000
구경40mm미만 2,	000
	000
	7강40mm미만 2, 7강40mm이상 4, 7강40mm미만 2,



(72) 제 580 호

(7)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40mm미만	1,000	
	계량기 구경40㎜이상	2,000	
(8) 정수처분 해체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	2,000	
	급수관 구경40㎜이상	4,000	
8.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법 인 1건	30,000	
	중개사 1건	2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9. 체육시설업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10. 정보통신관계			
(1) 공사의 사용전검사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20,000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30,000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건	40,000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건	60,000	
(2) 재검사수수료			
•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액의 50퍼센트			
11. 도로명주소 관계			
(1)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신청	1건	해당연도 단가계약 금액	
(2)도로명주소 대장 등본	1건	500	
(3)도로명주소 대장 열람	1건	300	
(4)인터넷에 의한 도로명주소 대장등본 발급 열람	1건	300	
•등본사본 출력물 5면 초과 시 1면마다 50원 추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제증	명 등 수수	<u> </u>
2 노스사과	게	

#### 2. 농수산관계

종류	요액
(25)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	1,000
(28)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1,000
(32)수산물가공업	1,000
(33)종묘생산어업 허가	4,000
(47)어업재개 신고	1,000
(66)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000

#### 4. 건설관계

종류	요액
(9)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000
(10)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000
(11)폐천부지교환 신청	1,000

### 5. 보건사회관계

종류	요액
(8)치과기공소 <u>등록사항 변경신</u> 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0,000
(10)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         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0,000
(15)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u>변경신고</u> 신청	20,000
(17)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         가 신청	40,000

# 개 정 안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 2. 농수산관계

종류	요액
삭제	삭제

#### 4. 건설관계

종류	요액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5. 보건사회관계

종류	요액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         고	10,000
(10)       안경업소       양도·양수신         고	10,000
(15)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신고에한정한다)	20,000
(17) 부속 의료기관 개설 <u>변</u> 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40,000



(74) 제 580 호

2017년 4월 7일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부칙<제27712호, 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3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 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 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 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76) 제 580 호

1 -	[고시조레기비 레이크레1취레 워크 HF워코레이미 ) 시 비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	1건당 30,000원
1.0	설등록(법인) 수수료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1건당 800원
17	재교부 수수료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당 10,000원
18.	수수료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	
	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0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당 800원
	수수료	160 0006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	1건당 60,000원
	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 2 0 00,000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	1건당 50,000원
	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1건당 30,000원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1건당 15,000원
2 =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	1건당 30,000원
0.0	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	1건당 15,000원
0.7	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1건당 10,000원
20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1건당 2,500원
29.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	
۵۶.	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대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	
	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	1건당 5,000원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77)

	업 · 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 · 낭장망어업 ·	
	각망어업) 수수료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1건당 5,000원
0.4	신청 수수료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	1건당 800원
	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60 0006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주택당 800원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1-10 000 i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1건당 2,000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	
	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당 3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	1744 20 000 0
	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	1건당 10,000원
	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 6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	
	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1건당 20,000원
	등록신청) 수수료	



(78) 제 580 호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당 30,000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당 20,000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당 30,000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당 20,000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당 20,000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당 10,000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 설 설치허가 수수료	)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 설 설치신고 수수료	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 설 변경신고 수수료	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 가 수수료	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	 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 1건당 1,000-	원
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기 1000	1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79)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 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 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1,500원



(80) 제 580 호

	수수료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1건당 1,000원
	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경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1건당 800원
	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40 0000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1건당 1,000원
	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0 1,000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 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1 7 7 0 0000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1717 45000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	1건당 3,000원
	용허가 신청 수수료	128 3,000 6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	   1건당 3,000원
	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20 0,000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	  1건당 50,000원
	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	  1건당 20,000원
100	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	1건당 4,000원
	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04.	삭제 <2016. 12. 30.>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1건당 2,000원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81)

허가 신청 수수료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 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 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 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82) 제 580 호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 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 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83)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1건당
   허가신청 수수료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 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1건당 5,000원



(84) 제 580 호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717 45 000 0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25,000원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신경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 거다 15 000 의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45,000원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23 45,000 1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25,000원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70 8 20,000 6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45,000원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6 9 40,000 6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25,000원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 2 0 20,000 1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15,000원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 2 0 10,000 2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45,000원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25,000원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	1건당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	1건당 50,000원	
획승인 수수료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20 00,000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		
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1건당 20,000원	
변경승인 수수료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1건당 50,000원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85)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 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 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 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남해군 공고 제2017 - 336호

## 지역개발사업구역(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지정 공람·공고

지역개발사업구역(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지정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구역 개요
- 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47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808m²
- 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관광자원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및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과 체험관광이 가능한 다누리 체험부스, 야외공연장, 오토캠핑장 등이 갖춰진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구역의 개발기간
- 개발기간 : 2017. ~ 2019.
- 사업시행자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87)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 3. 주민의견 제출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 제출

- \$\P\$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P\$52427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 전화 : 055-860-8624/팩스 : 055-860-3748/전자우편 : pbjayc@korea.kr

○ 제출방법 : 공람장소 비치된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등

####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5-860-86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1부



(88) 제 580 호

	의	견 제출서	
사 업 명	지역개발사업구	1역(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지정
	성명	Ş	방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7	<u></u> 한번호
주민 의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역(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 공고 제2017 - 343호

2017년 4월 7일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 남 해 군 수

시행자	상호 및 명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점용•시용자)	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소하천명		종자골천	
위치 공사 (점용·사용) 면적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30-4번지	
		557 m²	
개요	기간	2017. 3. 28.~영구	
	목적 및 사유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소하천 점용	



남해군 공고 제2017 - 344호

#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7.1 ~ 2018.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외 11필지일원	L=50m H=5~15m 부지조성 1식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열람기간 : 2017. 4. 5.~2017. 4. 1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4. 5.~2017. 4. 19.

ㅇ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9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사업장 위치	경상	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일	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2017년 4월 7일

제 580 호 (93)

	<u></u>	7-1-			지분 2분의1	지분 2분의1	지분 403분의132			지분 2분의1	지분 2분의1		지분 2분의1	지분 2분의1				
	기의 권리)	권리내용																
	관계인(소유권이외의	소0 묘0																
서	관계인(	사																
KH	六	조0 표0	기*의	고**	나 사	· · ·	퍼0 * 참	型0 * :	장 - -		하 * :	야* 나	· · · ·	하 * *	장 유	け <u>*</u>	경상*도(교*감)	
<u>o</u> i	o⊨	서	2현면 대사리	고현면 대사리	고현면 남치리	[현면 남치리	현면 대사리	현면 대사리	사하구 신평동	고현면 남치리	고현면 남치리	2현면 대사리	[현면 남치리	고현면 남치리	고현면 대사리	다. 마. 마. 마. 마. 다. 다.	정 상 라 다	
国	≺⊦	κ⊢	무해구 그	다 라 라	바	다매	는 다 라 라	다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 하 라	다 하 라	다매대	다 라 라	나하	바	다 라 라	<u></u>	
K	적 (m²)	피	8	138	CC	33		162	378	Ç	2	221	7	_	52	63	107	1,320
여이	* 고 전 전		192	138	o c	S	141	162	2,149	Ç	2	221		_	52	63	1,405	4.573
	머	현재	전	古	Ц	+	古	ᆱ	ᆱ	Ц	Н	古	Ц	H	古	버	ᅙᄆ	
	K	삼	전	古	П	H	古	<u>5</u> 0	<u>0</u> 0	Ц	H	古	Ц	H	古	버	<u>0</u> 0	
	꾀	ਨ	4	က	Ç	2	75	19	<u> </u>	-	00	2	c	0	4	2	·	
	ҡ	파	780	780	707	6	780	780	780	707	0	780	707	00/	780	617	617	
	품	ᆔ	대사	대사	17 12	<u> </u>	대사	대사	대사	1	<u>;</u>	대사	=	<u> </u>	대사	대사	대사	
	토지소재지	却	디	디	iç I	.H 21	님	디	디	Į.	- <del> </del> 21	님	L.	년 건	디	디	님	
		ıн	乖	売	7	<u> </u>	壶	売	売	<u> </u>	<u>-</u>	売	<u> </u>	<u>1</u>	亞	壶	壶	
	4	<u> </u>	-	2	c	0	4	5	9		_	∞	-	מ	10	=	12	丙



남해군 공고 제2017 - 366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중로3-1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종류: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중로3-1호) 개설공사
-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05번지 외 13필지(붙임 참조)
- 3. 출입기간 : 2017. 4. 10. ~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제 580 호 (95)

	<u> </u>	<u> </u>															
		권리내용															
	원이외의 권리)	성명															
	관계인(소유권이외의	사															
		전 B0		고*태	급 *	전 * E0	전0 * 0는	#. 사선	주0 사 사	10*10	之 * 回	[·	나 의 의 라	수 사 사	수 * 파	수 *	K-H
K H	☆	4		을 망운로21번길 48	을 망운로21번길 48	망운로21번길 50-	망운로 41	149, 202동 202호	망운로 64-5	망운로21번길 50-	홍릉로18길 34-1 (청		- IH	남해읍 아산리 311-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11-1	2현면 백옥대로 1호(골드스톤)
ᅋ	석	к⊢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경상남도 남해구 남해읍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149, 202동 202호 (외동, 서광아파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입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 량리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438번질6-26. 다동201호(골드스톤)
·KIN	(m²)	ם	1,186	13	83	~	382	30	17	103	237	88	190	20	10	w	ω
	도	총지적	5,675	241	106	228	740	756	711	194	463	202	1,601	119	109	က	202
	모	대장 현재		舌	전기	품	dπ	iπ	ŭπ	古	舌	<del></del>	버	버	버	전	금
	피	K	모		-	တ	~	2	<del>-</del>	57	4	9		<b>—</b>	<b>—</b>	-	9
	ਲ	파	44필지	405	406	407	409	414	419	419	419	419	1433	306	309	311	311
	ĸ	ᆔ		아산	상	상	아산	상	아산	상	상	상	양산	五	소	소면	퐈
	토지소재지	미	兩	這	<u>후</u>	空	壶	<u>10</u>	壶	<u>구</u> 미	這	<u>후</u>	這	空	這	<u>하</u>	<u>후</u>
	Ċ	тh	心工	뺩	壶	壶	亞	壶	壶	<u></u>	壶	壶	売	壶	壶	亞	壶
	- ik	<u> </u>		-	2	က	4	5	9	7	∞	တ	10	=	12	13	14